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66 발의연월일: 2025. 4. 9.

발 의 자:황운하·정춘생·한창민

김재원 · 김준형 · 서왕진

신장식 • 박은정 • 차규근

백선희 · 김선민 · 용혜인

이성윤 · 강경숙 · 윤종오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, 「국회법」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"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,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"하여야 함

또한 국회의원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치 행위와 발언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,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 괴 행위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는 정도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저지르거나, 이를 선전·선동하더라도,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있는 근거가 모호하여, 「국회의원 윤리강령」 위반으로 징계할 수밖

에 없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, 이를 선전·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,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,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55조제17호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##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0호에"를 "제10호·제17호 또는 제18호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7. 「형법」 제87조에 따른 행위를 하였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내란을 예비 도는 음모하거나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18. 「군형법」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 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군사반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 는 음모하거나 반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
제156조제7항 중 "제155조제10호에"를 "제155조제10호·제17호 또는 제18호에"로 한다.

제1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단서 중 "제155조제10호에"를 "제155조제10호·제17호 또는 제18호에" 로 한다.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5조(징계) 국회는 의원이 다	제155조(징계)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	
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	
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	
다만, 의원이 <u>제10호에</u> 해당하	<u>제10호·제17호 또는</u>
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	<u>제18호에</u>
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	
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	
수 있다.	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7. 「형법」 제87조에 따른</u>
	행위를 하였거나 같은 법 제9
	0조에 따라 내란을 예비 도는
	음모하거나 내란의 죄를 범할
	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
	위를 하였을 때
<u>&lt;신 설&gt;</u>	<u>18. 「군형법」 제5조 각 호의</u>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
	하였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
	라 군사반란의 죄를 범할 목
	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
	반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

- 제156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7 ~ ⑥ (생 략)
  -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 장은 제1항, 제2항,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 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 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 여야 한다.
- 제163조(징계의 종류와 선포) ① : · ② (생 략) <신 설>
  - ③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
<u> 때</u>
제156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
~ ⑥ (현행과 같음)
⑦ <u>제155</u> 조제10호·제17호 또
는 제18호에
제163조(징계의 종류와 선포) ①
•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
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
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의결하
여 제명할 수 있다.
<u>4</u>
제155조제10
<u>호·제17호 또는 제18호에</u>

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하였을

<u>④</u> · <u>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	과 같음)